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477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47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531191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삼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천혜진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53119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144,657원 및 그중 243,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1. 8. 15.까지는 연 2.64%,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신용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기한 이내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B가 2021. 3. 15.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144,657원(보증채무 이행청구일 2021. 6. 16.자 기준 보증채무 원리금) 및 그 중 원금 243,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1. 8. 15.까지 연 2.64%,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1. 22.까지 연 2.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전자통지는 주채무가 상환되었다는 의미의 통지로서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 것이거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소급하여 해제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 보건대, ①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기존의 법률관계에 의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전자통지 관련 을 제3호증(신용보증해지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부 대출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을 제2호증의 2(실행해지조회), 을 제5호증(대출보증원장)에 ‘주채무상환해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피고 내부전산자료상 표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자통지로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양형권, 판사 황순교